금 전 소 비 대 차 계 약 서

대 주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차 주	성 명	㊞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보증채무내용	차주의 본 계약에 따른 대여금 전액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채무 (이자, 연체이자, 비용 등 포함)
	주 소			

대여금액(실수령액)	금 [한글로 금액] 원 (₩[숫자로 금액])	변 제 방 법	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대 여 일 자	년 월 일	상 환 일 자	년 월 일
이 자 율	월 % (연 %)	연체이자율	월 % (연 %)
부대 비용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 기재]	부대 비용의 금액	금 [한글로 금액]원 (₩[숫자로 금액])
이자율계산방법	이자 및 연체이자는 민법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규정에 따라 일일 단위로 대여금 지급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대여금상환계좌 (이자 포함)		대 여 금 담 보	임대 보증금 양도 담보 / 기타 담보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제1조 (대여금 지급 방법) 본 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은 은행 송금에 의한다. 은행 송금 시 송금자명은 대주 명의로 한다.
제2조 (대여금액 및 이용) 본 계약에 의한 대여금액은 본 계약 대여금액란에 기재된 대로이며, 차주는 본 계약에 따라 대여금을 지급받는다.
차주가 허위 사실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대여금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는 것을 비롯하여 본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차주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대주는 차주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원리금 합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변제 장소 및 방법) 본 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변제는 본 계약에 명시된 상환 방법에 따른다.
채무의 변제는 은행 송금을 통해 대주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주의 상황에 따라 대주와의 합의 하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 변제금은 법적 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제4조 (영수증 등 서면 교부) 대주는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직접 수령한 경우, 영수증 및 대여금 잔액 확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대주와 차주의 상호 합의 하에 체결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발생하는 채무 잔액은 당일에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이자 계산) 민법에 근거한 상호 합의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해 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약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을 한다 (연체이자 포함).
대여 계약일 또는 대여금 입금일로부터 1개월 후 해당 일자가 이자 납입일이며, 이자 납입일이 지나게 되면 일일 단위로 연체이자 계산이 되고, 아래 제10조의 조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상실을 하거나 대여 만료일자 이후의 이자 계산은 약정한 연체이자에 의하여 계산을 한다. (단, 이자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차주가 부담한다.
① 차주, 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주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 행사 및 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② 채무 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
제1항에 의한 비용을 대주가 대신 지급한 경우, 대주는 이를 차주에게 통지하고 차주는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만일 차주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주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채무에 관한 연체이자율(1년을 365일로 계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변제한다.
제8조 (신고 사항)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이 주소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휴직, 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업 또는 폐업한 경우 즉시 서면 또는 전화로 대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주가 보낸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걸리는 시간(발송일 포함 3일)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담보의 제공) 차주 또는 보증인의 신용 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 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주가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주는 대주의 청구에 의하여 대주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 보전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제10조 (기한의 이익 상실) 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차주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① 차주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② 개인회생, 파산, 화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③ 대여금 수령 후,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된 임대차 관계가 허위이거나 가장된 것으로 판단될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여금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때
④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된 임차보증금 관련 원본 계약서 등 담보 관련 서류를 회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담보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⑤ 대여 기간(기한 연장의 경우 연장 기간 포함) 중 이자 지급이 총 2회 이상 지체되었을 때
제1항에 의하여 차주가 대주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주의 명시적 표시가 있거나 대주가 분할 상환금, 이자, 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을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주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연대보증)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보증 내용에 따라 대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채권 양도) 대주는 본 계약에 따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차주 및 보증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 (신용정보) 차주가 제공한 신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특정 정보 및 차입 내용, 상환 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차주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대주의 채권 보전 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열람을 승낙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기한 전의 임의 상환 등) 차주는 약정한 상환 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계약 체결 시 차주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대주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하거나 이에 대한 대주의 규정을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기타 운영 및 사업 비용 등을 차주가 부담한다. 차주는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여 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서의 보관 및 반환 등)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는 대주용/차주용 2부를 작성하여 대주용은 대주가, 차주용은 차주가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단, 연대보증인이 입보할 경우 차주용을 한 부 더 작성하여 간인을 한 후에 연대보증인에게 교부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차주 및 연대보증인은 대여금 상환 완료 후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에 의해 작성된 계약 관계 서류는 채무 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주가 보관하며, 기타 관련 제출 서류는 차주(연대보증인 포함)에게 반환하여 준다.
제16조 (보충란 기재에 대한 합의)차주는 대여금액, 대여 계약일자, 상환일자, 이자율, 연체이자율, 당사자 성명, 부대비용의 내용 및 금액 외의 일반적인 기재란에 대하여 대주가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위임한다.
제17조 (관할 법원의 합의)이 약관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아울러 대주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입금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위 차주 본인

위 차주 본인(및 연대보증인 본인)은 본 계약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상기 조항들을 승낙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차주 본인은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승낙하고 본 계약서(대주용)를 대주에게 맡기며, 차주용 계약서를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차 주 : ㊞ 연대보증인 : ㊞